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20342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법률에서 위임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정 기간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3조의5제3항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0. ~ 6. 0.) 예정

3) 행정규제 : 국무조정실 사전 검토결과 비대상 의견

대통령령 제 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5(건축물등의 양도) ① · ② (생 략) <u><신 설></u> <u>③</u> · <u>④</u> (생 략)	제3조의5(건축물등의 양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법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u>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489